

## 행정기관명

수신  
(경유)

제목 :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·환급 통지서

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(또는 환급)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□ 조정부과(또는 환급) 내역

- 부담금:
- 조정부과(또는 환급) 금액:
- 조정부과(또는 환급) 결정일:
- 수납(또는 환급)은행 및 계좌번호:
- 조정부과(또는 환급) 사유:
- 납부고지서 발행번호: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끝.

발 신 명 의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)

우 도로명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)

팩스번호( )

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